

보 고 사 항

□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기타 일반안건

□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2000. 10. 12

(화순군의회 공고 제2000-6호)

<공고내용>

- 집회일시 : 2000. 10. 12 (木) 10:00
- 집회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처리현황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2000. 9. 5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9. 25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44호

- 화순군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 — 2000. 9. 5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9. 25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45

- 화순군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 2000. 9. 5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9. 25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46호

- 기금운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2000. 7. 4 집행부이송

□ 관계공무원 변동상황 보고

(2000. 10. 7 자)

직	성명	신임	현임	비고
지방행정5급	김종철	재무과장	총무과장	
"	노양현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	임시풍	화순읍장	사회복지과장	
"	임양환	총무과장	화순읍장	

□ 각종 의안 제안상황 보고

○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00. 10. 6 의원발의

- 발의자 :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3

- 회 기 : 2000. 10. 12. ~ 10. 21 (10일간)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0. 10. 6 의원발의

- 출석요구내용 : 별첨

○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0. 10 의원발의

- 발의자 : 김성인 의원 외 2

- 제안이유

-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발언하도록 하고 자료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의원 아닌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에

서 의결로 할 수 있도록 신설 (안 제12조의 2)

※ 2000. 10. 10.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2000. 10. 10 의원발의

- 발의자 : 김 성 인 의원 외 2

- 제안이유

- 의회의 보충발언과 질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보충발언을 1문1답식으로 개정 (안 제33조)
-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전 까지 군수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답변은 24시간 전까지 제출(안 제66조)

※ 2000. 10. 10.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9. 21 군수제출

- 제안이유

-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보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제8조(사용료의 반환)에 “사용 예정일 1일 이전에 미사용 신고를 할 때 기 납부액을 반환 (단, 시설 사용중에는 반환하지 않음)” 규정을 신설

※ 2000. 9. 21.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 2000. 10. 9 군수제출

— 제안이유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안 제6조 제1항 제4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를 삭제

※ 2000. 10. 10.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 2000.10. 9 군수제출

— 제안이유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고 중복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전면폐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와 중복

※ 2000. 10. 10.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2000. 10. 9 군수제출

—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표준모델안을 적용 업무실적이 전무하여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전면 폐지

※ 2000. 10. 10.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0. 9 군수제출

— 제안이유

- 정부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지침에 따라 여러부서에서 수행해오던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주요골자

- 과 명칭 변경
 민원봉사과 → 종합민원처리과
- 부서별 소관업무의 조정

실과별	현행	개정안
민원 봉사과	(신설)	· 위생·환경·농지에 관련된 복합민원 처리
사회 복지과	· 공중위생관리업소 인·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관리(유흥·단란주점 허가 제외)
환경과	· 수질관련 허가 및 지도·단 속에 관한 사항 · 오수·분뇨·축산폐수 관련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오수·분뇨·축산폐수 관련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폐수 및 축산폐수 배 출 시설 인허가 제외)

※ 2000. 10. 11.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0. 9 군수제출

—제안이유

-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달
한 시·군정보화 기능 보강 방침에 따른 정보화 인력의 충원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599명 → 601명 (+ 2)
 - 집행기관의 정원 : 584 → 586 (+ 2)
- 한시정원 명시 (부칙) : 증원된 2명은 2002. 12. 31 까지 한시정원

※ 2000. 10. 11.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0. 9 군수제출

—제안이유

- 국민의정부 출범이후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표준 모델안을 적용 상위법과 중복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함.

—주요골자

- 동 조례 제17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삭제
제16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군민 보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가축 배설물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
 - 2.축산폐수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위한 축사내의 청결 유지
 - 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2000. 10. 11.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0. 9 군수제출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표준 모델안을 적용하여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고 행정간소화 및 민원 편익차원에서 양수기 사용료 선납 및 사용 연기시 3명의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골자

- 양수기 대여시 사용자는 사용료를 선납할 필요가 없고 사용료 납기 연기를 위해서는 3명 이상의 보증을 세우는 현행 규정을 폐지

※ 2000. 10. 11. 산업·건설위원회 회부